연구자료 CRM 2020-01

교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교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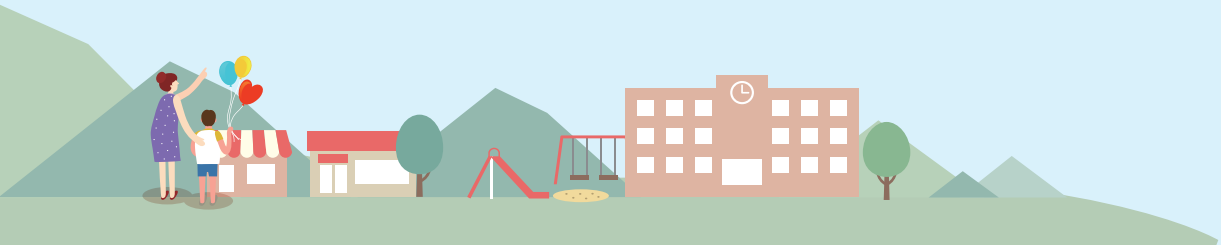

contents

04 일러두기

제1부
0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제2부
1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제3부
2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24 1. 기관 조치 및 심의
26 2. 침해자에 대한 조치
30 3. 피해교원 지원

제4부
33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절차
34 1. 단계별 대응 절차 흐름도
38 2. 대응 절차별 유의사항
53 3. 교원지위법 적용 이외의 사안 관련 대응 방법

제5부
55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내 예방교육 방안
56 1.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58 2.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제6부
61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별 대응요령

일러두기

교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이 2019. 10. 17.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 처리 및 대응 조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해교원 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침해자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교원지위법이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이 변화된 교원지위법을 잘 숙지하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교육 자료는 교원의 관점에서 변화된 법령과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먼저 1부부터 3부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은 중간중간 Q&A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일반 선도 사안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본 교육 자료를 통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일반 선도 사안으로 잘못 처리되거나, 일반 선도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원지위법에는 침해행위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 자료에서는 이를 기관별로 나누어 기술함으로써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대응 조치가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침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관하여 법 개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 기술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4부에서는 업무담당자, 학교관리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안 발생의 초기 대응부터 사후처리까지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눈에 절차상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절차마다 유의할 점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5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예방 교육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부에서는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교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유사 사례는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해결하고자 할 때 참고가 될 것이며,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교육 자료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나아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제1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의 변천 과정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지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는 계속 있었지만, 이를 법률로써 규율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2016년 2월, 교육활동 보호 규정이 교원지위법에 신설되었고, 이때 교원지위법의 명칭도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교원지위법은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되어 2019. 10. 1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대통령령
舊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규정 부존재	**舊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2013. 3. 23. 대통령령 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도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규정됨.
▼	▼
舊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936호, 2016. 2. 3. 공포, 8.4. 시행) - 교육활동 중에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해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제명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舊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18호, 2016. 8. 2. 공포, 8.4.시행)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명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309호, 2019. 10. 17. 시행)

- 침해학생에 대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강화함.
-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 보호조치의 근거를 강화함.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9호, 2019. 10. 17. 시행)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왜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교권은 권익주체인 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을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교권남용을 이유로 교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특정 위법행위를 직접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모든 교육주체가 향유하는 공통의 이익이므로,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교육주체 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제2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 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01 교육활동 침해주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입니다. 실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부분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나 법은 침해자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주로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자, 즉,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학교관리자나 동료교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학교관리자나 동료교원에 의해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활동과 관련된 침해행위이어야 합니다. 업무분장, 관리자의 복무관리 또는 행정사항에 대한 지시 등 교육활동과 관계없이 발생한 분쟁사안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닙니다.

02 교육활동 침해객체

교육활동 중인 교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교원의 신분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이뤄진 교원에 대한 위법행위에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위도 있습니다.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형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폭행·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이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분 대상이 아닌 행위로는 성희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04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폭행·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상해)을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Q. 반드시 사람의 신체와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폭행이 성립되나요?

A.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판 89도1406; 대판 2000도5716)

Q. 피해교원이 수면장애, 식욕감퇴,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상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A.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이 훼손되거나 장애가 초래될 경우에도 상해에 해당됩니다.(대판 98도3732)

협박(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에게 '교직을 그만두게 만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피해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경우

Q. 말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협박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습니다.(대판 74도2727; 대판 2010도14316)

명예훼손(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공연(公然)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교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Q. 국민신문고나 교육청에 허위사실로 교원을 신고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

A.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없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나 교육청에 신고한 행위는 비공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무고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 그 자체로는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부수적으로 다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Q. 학부모가 교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러한 정황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A.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그 정황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1)]

1)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모욕죄는 모욕적인 언행이 모두 포함되므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동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 교사의 신체적 특징을 지칭하며 경멸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 수업태도를 바로 하라는 교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 보인 경우

Q. 전화로 욕설을 한 경우 형사상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A. 전화 통화는 대부분 일대일로 이뤄지는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모욕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욕설의 정도가 자신의 불쾌한 감정표현을 하는 것을 넘어 피해교원에게 큰 충격을 주는 심각한 수준이라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제4호 참조)

손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국·공립학교의 공용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 출석부, 교사의 업무수첩 등을 뜯어내어 훼손하거나 감추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1)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범죄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수업 중 교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 휴대 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Q. 학생이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촬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해당 영상 또는 사진을 받아 돌려 본 학생들도 있습니다. 돌려 본 학생들도 형사처분 대상이 되나요?

A.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행위는 각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1항, 2항)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촬영행위, 반포행위는 모두 교육활동 침해행위입니다.(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그런데 반포의 대상이 된 학생은 어떻게 조치될까요? 위 법률에서 반포행위자는 처벌하지만, 반포의 상대방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비춰 보면, 반포의 대상이 된 학생(소극적으로 촬영물을 받은 학생이나 우연히 보게 된 학생)을 교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자로 보아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면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형법 제31조제1항), 불법촬영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반포행위를 교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반포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점에 유의하여, 학생이 불법촬영 사실을 알게 되면 선생님께 바로 알리고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반포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3호)

1) 개념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행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되는 주요 행위로는 ①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담임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Q.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스팸 처리하여 교원이 문자메시지를 실제로는 보지 못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수신 차단으로 실제로는 상대방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공무집행방해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업무방해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공립 학교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며,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Q.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수단에 차이가 있나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지만, 업무방해죄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죄 수단의 인정범위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넓습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판결 참조)

Q. 학생도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나요?

A.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학생의 범죄행위에도 교육·선도 조치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고, 형사적인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은 연령에 따라 형사처분이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의 기준 연령은 만 14세입니다.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 14세 이하인 자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대상을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호·5호), 보호시설 감호위탁(6호), 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9호·10호)가 있습니다.

(단, 2호 및 10호 처분은 만 12세 이상, 3호 처분은 만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가능함)

범죄 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분 가능 / 보호 처분 가능 (일반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
촉법 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분 불가 / 보호 처분 가능
만 10세 미만	형사처분 불가 / 보호 처분 불가

05 형사처분 대상이 아닌 행위

성희롱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수업시간 중 교사에게 "가슴이 없어서 등인 줄 알았어요"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 성적인 물건(피임용품)이나 야한 사진을 교사가 볼 수 있도록 교탁 위에 놓거나 교사의 동선상에 떨어뜨려 놓는 경우

Q.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와 성희롱(「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사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성폭력범죄는 위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반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에서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규율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성희롱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육체적 성희롱(예: 불필요하게 교사의 얼굴, 허리, 손, 허벅지, 어깨, 엉덩이, 가슴 등에 접촉하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예: 교사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예: 성적인 사진, 행동을 보이는 행위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정도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 교사의 아동에 대한 성희롱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Q.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동성간에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만한 객관적인 행위가 있고, 피해교원이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 개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느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

Q.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A. 「대한민국헌법」 및 「교육기본법」 제5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1) 개념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학교장이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를 무시하며 학생들에게 교사의 말을 듣지 말라고 종용하는 경우

Q.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A.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에 관하여 학교규칙(OO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칙 등)에 미리 규정하고, 교칙에 따라 운영한다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제3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01 기관 조치 및 심의

관할청의 조치

1) 관할청의 고발(교원지위법 제15조제4항)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은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여야 합니다.(단, 모욕죄와 같이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피해교원의 형사고소가 요구되고, 관할청의 형사고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가해자로부터 보복·위협 등의 우려와 형사고소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현장에서 형사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관(관할청) 차원에서 형사고발이 이뤄진다면 형사절차에 대한 교육현장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부분은 피해교원이 침해자(학생인 경우 보호자)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할청은 이와 관련하여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방식으로 피해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및 구상(求償)(교원지위법 제15조제5항)

관할청은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비용 등을 부담하고, 침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관할청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더라도 침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침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관할청이 관련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다면 그 비용은 침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3) 관할청은 보고 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교원지위법 제16조제2항)

4) 관할청은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의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18조제4항)
관할청은 학생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과태료 부과액 등 관하여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조

학교장의 조치

1) 피해교원 보호조치(교원지위법 제15조제2항)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상 규정된 보호조치로는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③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2) 침해행위 내용 및 보호조치 결과 보고(교원지위법 제15조제3항)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 및 보호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축소·은폐 금지(교원지위법 제16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 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학교의 장이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의무를 하지 않거나 사안을 축소·은폐할 경우, 이를 규율하는 벌칙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의 장에게 부여된 법률상 직무의무이므로 위반 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 내부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 제18조)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2. 침해자에 대한 조치"에서 상술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교권보호위원회에는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되고,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②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2], ③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설치되고,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②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 ④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2) 이때 분쟁조정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조정 및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분쟁조정을 말합니다.

Q.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A. 교권보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둘 수 있습니다.

02 침해자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1) 교원지위법 개정 이전

현행 교원지위법 시행일(2019. 10. 17.) 이전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를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5가지 징계조치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의무교육 대상이라면 최대 10일의 출석정지 조치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짧은 징계기간 때문에 교원이 폭행·상해, 성폭력범죄 등 직접적이고 심각한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교육활동을 위해 곧 다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가해자를 대면함으로써 피해교원은 교육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피해교원이 교직을 그만두거나 침해학생을 피해 학교를 옮겨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2)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법률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근거를 교원지위법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아닌 교원지위법에 의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 학급교체, 전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상 출석정지 조치와 달리 출석정지 기간에 제한(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을 받지 않습니다.[3] 그렇다고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기간의 출석정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침해정도에 비례하는 적정한 기간으로 부과하여야 징계양정에 있어서 위법이 없습니다.
- 전학 조치를 받은 침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필요적 병과), 전학 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임의적 병과). 단,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하지 않습니다.

3) 헌법재판소 2019. 4. 11자 2017헌바140 결정 참조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일 2019. 10. 17.) 이전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일 2019. 10. 17.) 이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교원지위법」 제17조
가능한 조치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⑤ 퇴학조치(퇴학조치는 의무교육 대상자[4]에는 적용 안 됨)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조치(퇴학조치는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적용 안 됨)

Q. 침해학생에게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나요?

A. 교원지위법은 침해학생에 대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8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병과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해학생에게는 심의 사안마다 하나의 조치만 할 수 있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병과될 수 있습니다.

Q.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반성 및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가요?

A.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서면사과(1호) 조치가 존재하지만, 교원지위법에는 반성 및 사과 또는 재발방지 약속에 관한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치로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고, 초·중등교육법상 지도행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권유함에 그쳐야 하고,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조치도 다른 조치와 달리 불이행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강제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1항 참조)

4)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3) 조치 결정 시 세부기준(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참조)

-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침해행위의 ① 심각성, ② 지속성, ③ 고의성, ④ 침해학생의 반성정도 및 선도가능성, ⑤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⑥ 피해교원의 임신·장애 여부와 정도, 그리고 ⑦ 침해학생의 장애 여부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전학 및 퇴학조치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남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치 결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학 및 퇴학조치는 동일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교원에게 상해·폭행을 가한 경우와 성폭력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발생의 경우에도 전학 및 퇴학조치가 가능합니다.

참고 :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매우높음	5	5	5
높음	4	4	4
보통	3	3	3
낮음	2	2	2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구분	침해학생 반성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높음	0	0
보통	1	1
낮음	2	2
없음	3	3

② 추가 판단 요소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호·2호·4호·5호·6호와 병과 가능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호	5~7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		2호	8~10	사회 봉사
		3호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호	11~13	출석 정지
		5호	14~16	학급 교체
	교외	6호	17~21	전학
		7호		퇴학

• 전학·퇴학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 전학 또는 퇴학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조치 가능

학생 외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

1)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교원과 학부모, 양쪽 모두가 잘못이 있는 복합사안(예: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우, 분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유력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의한 해결은 당사자 사이 관계회복, 분쟁의 조기해결,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단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분쟁조정 전에 양쪽 입장이 충분히 조율이 되어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성립이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교권보호위원회 심의·통지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외 침해자의 행위를 심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로써 해당 행위가 법상 금지되는 행위임을 공인받게 되며, 이후 사안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고발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에게 징계권한이 없으므로 형사처분 법규에 위반하는 심각한 침해행위에 한하여 형사고소·고발로써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교원이 원하면 관할청이 형사고발하여야 합니다.

03 피해교원 지원

특별휴가(교원지위법 제14조의3,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1항)

학교의 장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교육활동 침해 특별휴가 연간 일수 제한이 있나요?

A. 별도로 연간 허용일수의 제한은 없습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관련 교육부 주요 질의회신 사례)

Q. 교육활동 침해 특별휴가의 세부 사용 방침이 있나요?

A.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하여 학교장이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특별휴가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자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내부결재 등 근거자료가 요구됩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관련 교육부 주요 질의회신 사례).

법률 지원(교원지위법 제14조의2)

관할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을 참조)

심리치유 지원(교원지위법 제17조)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제4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절차

01 단계별 대응 절차 흐름도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절차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사안 발생 초기 대응	• 피해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관리자/교권보호업무담당자) • 주변 교원, 담당 교원 – 인지 즉시 개입하여 피해교원이 침해행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침해행위 학생과 분리 조치 – 침해자 진정 조치 – 보호자 연락,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 학교관리자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교원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피해교원이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	• 주변 교원 또는 담당 교원에게 도움 요청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 학교관리자의 피해교원 보호조치 • 사안 조사(담당 교원) – 침해학생 진술서 확보(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치료·안정 이후 피해교원의 피해사실 확인서 확보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자료 수령 – 당사자 중 한 쪽이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양 당사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	• 피해사실 진술 또는 진술서 작성 • 피해 증거 제출 • 법률지원단,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분쟁조정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보호자)에게 진술 기회 부여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심의,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의,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의결 –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 (필요한 보호조치 요구)
▼		
학교장 조치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지위법상 조치(처분) •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조치(처분)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전학·퇴학조치는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외 조치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사립학교는 민사소송)에 할 수 있음	•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		
조치 이행 및 사후처리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조치 이행 – 1호부터 5호: 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 – 6호: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7호: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1회 연장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해결 확인, 재발 방지	• 회복 지원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절차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사안 발생 초기 대응	• 피해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관리자/교권보호업무담당자) • 주변 교원, 담당 교원 – 인지 즉시 개입하여 피해교원이 침해행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침해행위 학생과 분리 조치 – 침해자 진정 조치 – 보호자 연락,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 학교관리자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교원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피해교원이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	• 주변 교원 또는 담당 교원에게 도움 요청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 학교관리자의 피해교원 보호조치 • 사안 조사(담당 교원)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치료·안정 이후 피해교원의 피해사실 확인서 확보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자료 수령 – 당사자 중 한 쪽이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양 당사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	• 피해사실 진술 또는 진술서 작성 • 피해 증거 제출 • 법률지원단,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심의/분쟁 조정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진술 기회 부여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심의,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의 –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 (필요한 보호조치 요구)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심의/분쟁 조정	– 위원회 심의 결과를 당사자, 학교장에 서면 통보 – 관할청에 심의 결과 보고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은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도 마찬가지)	
▼		
사후처리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단 요청	•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 회복 지원

* 보호자 등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또는 지인, 교직원, 학교 방문자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됨. 다만, 관리자 및 동료교원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02 대응 절차별 유의사항

초기 대응

1) 피해교원의 직접 대응 자제

피해교원은 상황에서 벗어나, 주변에 현장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교원이 무리하게 직접 대응하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인 피해교원이 직접 대응하면서 흥분하여 같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새로운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2) 증거자료 확보

가능한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목격자 진술',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거나 전화 통화 등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Q. 피해교원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위법하지는 않나요?

A. 대화(對話)자가 대화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5]. 하지만 실상은 통화내용 녹음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상대방의 가해증거 확보를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 관련자 분리, 교육현장 안정화

주변 교원 또는 담당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사안을 인지한 즉시 개입하여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합니다. 관련자들을 분리한 뒤 침해자를 진정시키고, 침해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이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킵니다.

4) 응급 상황 시 신속히 신고

목격자와 관리자 또는 당사자는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119로, 범죄 상황으로 판단되는 심각한 경우에는 112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5) 다만, 법원은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1) 피해교원 보호

학교장은 피해교원 보호조치로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필요한 치료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원지위법 제14조의3(특별휴가)에 따라 최대 5일까지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피해교원에게 복무규정 및 병가규정에 따라 조퇴 및 병가조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사실 확인 및 조사

담당자는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신고(접수)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침해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억이나 증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내용

- 당사자(피해교원, 행위자) 인적사항
- 사건의 경위(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무엇을, 왜)
- 사건으로 인한 결과(피해교원의 신체, 정신적 피해 정도, 행위자 상태)
- 당사자 요청사항
- 목격자 진술 및 증빙자료

3) 피해교원 진술

피해교원이 안정되면 피해정황과 그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접수)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신청서를 받습니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원인이 된 행위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구분

교사의 다소 부적절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해결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5) 행위자 진술

침해자가 진정되면 의견을 청취하고 진술(의견)서를 받습니다. 진술(의견)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조사하기보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일,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모든 진술 절차를 거부하고 진술을 포기할 경우에는 피해교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사실 확인 목적으로 학생의 진술서를 받을 때 학생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진술서 작성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너무 어리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보호자를 참여시킵니다.

6) 목격자 진술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경우(양측이 사실관계에서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목격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가감 없이 진술하도록 안내하여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술 내용은 문서, 녹음 등 기록물의 형태로 확보합니다. 진술 이후에는 이로 인하여 목격자가 당사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목격자 신분과 진술 내용을 비밀로 합니다.

Q. 침해학생 측이나 피해교원이 목격자 진술서나 상대방 진술서 등의 공개를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A. 진술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6], 제6호[7]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업무담당자는 조사 및 사실 확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요청사항과 조정의사 등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등 이후 진행되는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교원에게는 보호조치와 교육청 지원 사항에 대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립·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하거나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및 심의

학교는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각급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합니다.

---

6)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②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④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① 위원의 임명과 위촉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원으로서 해당 요건〉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회의 소집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③ 회의 준비

필요한 서류(사안조사서, 관련자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증거자료 등)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가해측 대기 장소를 분리하여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당사자 출석을 위한 통지는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가 학생인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관련자가 불참의사를 밝히는 경우 서면 진술 또는 진술권 포기서 등을 받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락되지 않은 참여자가 없도록 사전 참여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장 조치

1) 조치 결과 통보

학교의 장은 교원지위법상 조치(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는 심의 조정일, 심의 결과, 결과와 관련된 이유,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기간, 결과 통보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이의제기 절차 안내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 ·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사립학교 학생은 민사소송 제기)에 할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 결과 처리

합의서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고, 분쟁조정 불성립 시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후처리

1) 학교장은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2) 학생 조치 처리 기한(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참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2.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3)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결과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1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진행 시나리오(예시)

가. 조치 및 심의 절차

개회선언

• 회의 자료 준비 및 위원 참석 확인

(간사) 반갑습니다. ○○학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간사 「○○○」입니다. 지금부터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학교 교권보호업무담당자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므로 ○○학교 제○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인사말, 안건상정

(위원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목적과 규정에 의거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번호 2000-00, A 교사와 B 학생이 관련된 사안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 안내

(위원장)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간사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의결로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스스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시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요 안내

(위원장) 간사께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요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간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요」 안내

-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됩니다.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진행과정은 필요에 따라 녹취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주의사항 전달

-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에 대한 선도·조정조치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임을 밝힙니다.
-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조사보고

(위원장) 이번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사건조사보고」 교육활동 침해(분쟁조정)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 ○일 장소에서 교육활동 침해(분쟁)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월 ○일 해당 교원 및 목격자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졌고,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인 ○○○ 학생은 ○월 ○일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 **당사자 사이 상반된 주장이 있는 경우**

- A 교사와 B 학생이 모두 인정하여 다툼 없는 사실은 ~이고, 당사자 사이 상반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교사 측 주장 및 관련 증거는 ~입니다.
  - B 학생 측 주장 및 관련 증거는 ~입니다.

☞ **피해사진, 진단서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

(간사) 양측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 의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쟁점사항 확인, 질의응답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원치 않으므로 이번 위원회의 주요 쟁점 사안은 당사자의 상반된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정도 및 선도 가능성,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에 대한 파악으로 요약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간사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교원 진술

(위원장) 먼저 피해교원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해당 교원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는 피해교원을 입장시킨다.)

(위원장)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피해교원) 저는 ○○○입니다.

(위원장)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여부 결정)

피해교원 진술

(위원장) 다음으로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사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생님께서는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안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질문 또는 필요한 발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침해사실 확인(특히, ○○○학생과 보호자의 주장과 다른 경우 확인)
-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관계회복정도)
- 부가적 판단요소(임신, 장애 여부)
- 기타 선도·교육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질의 응답〉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 동의) 선생님께서는 이 사안과 관련한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교원 진술)

(피해교원) ※ 교육활동 보호조치를 위한 바람과 요구사항을 진술

※ 피해교원이 불참한 경우, 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허락되지 않은 참여자가 없도록 사전 확인 필요.

• (위원장) 질의 답변 종료 확인 후 피해교원 퇴장

관련자 진술

• 관련자 입장

(위원장) 다음은 관련 학생 및 보호자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관련자(학생, 보호자)를 입장시켜 주십시오.(대기 장소에 있는 침해관련자를 입장시킨다.)

(위원장)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침해관련자) 저는 ○○○입니다.

(위원장)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여부 결정)

(위원장) 다음으로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신뢰해주시고,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사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학생과 보호자는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학생과 보호자 진술〉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침해사실 확인(특히, 피해교원의 주장과 다른 경우 확인)
-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관계회복정도)
- 부가적 판단요소(장애 여부)
- 기타 선도·교육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해관련자) 마지막 진술

※ 침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와 동반하여 참석할 것을 요구. 불참일 경우, 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허락되지 않은 참여자가 없도록 사전 확인 필요.

• (위원장) 질의 답변 종료 확인 후 침해관련자 측 퇴장

피해교원 보호조치결정

• 조치 논의 및 결정

(위원장)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1) 피해교원(○○○)은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적 상담과 특별휴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 개진 및 논의 후 찬반 의사 결정)

〈결정〉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교원 ○○○에 대한 보호 조치는 출석위원 ○명 중 ○명의 동의로 ○○○ 조치를 학교장에게 권고하겠습니다.

침해자 조치 심의

• 조치 논의 및 결정

(위원장) 지금부터는 침해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기본 판단요소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관계회복정도와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개진 및 논의)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번 사안이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계십니다.

침해자 조치 결정

〈결정〉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시 기본 판단요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각 항목별로 개별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판단요소 별 위원의 점수 산정)

(위원장) 위원님들의 판단을 종합한 결과, 의결에 필요한 위원 과반수 결정을 기준으로, 이 사안의 심각성은 △점, 지속성은 △점, 고의성은 △점, 반성정도 △점, 관계회복정도 △점이며, 합산 △점입니다. 교육부 고시 상의 가중·감경 사유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제◇호 □□조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학생 ○○○에 대한 조치는 제◇호 조치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이것으로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 : 분쟁조정 절차 시나리오(예시)

개회선언

• 회의 자료 준비 및 위원 참석 확인

(간사) 반갑습니다. ○○학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간사 「○○○」입니다. 지금부터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학교 교권보호업무담당자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므로 ○○학교 제○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인사말, 안건상정

(위원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제15조제4항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목적과 규정에 의거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번호 2000-00, A 교사와 B 학부모가 관련된 사안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 안내

(위원장)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간사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의결로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스스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시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조사보고 질의 응답

(위원장) 이번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사건조사보고」 교육활동 침해(분쟁조정)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 ○일 장소에서 교육활동 침해(분쟁)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월 ○일 해당 교원 및 목격자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졌고,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인 학부모님은 ○월 ○일 의견진술을 하였습니다. 양당사자 모두 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 상반된 주장이 있는 경우**

- A 교사와 B 학부모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다툼 없는 사실은 ~이고, 당사자 사이 상반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교사 측 주장 및 관련 증거는 ~입니다.
  - B 학부모 측 주장 및 관련 증거는 ~입니다.

☞ **피해사진, 진단서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간사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 개시

(위원장)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원하고 있으므로, 먼저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위원장) 간사께서는 피해교원과 학부모님을 입장시켜 주십시오.(대기 장소에 있는 피해교원과 학부모를 입장시킨다.)

(피해교원, 학부모 신원 확인)

(위원장) 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통해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당사자통합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양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 절차를 원하신 만큼 마음을 열고 미래지향적 조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여부 결정)

(위원장) 이번 분쟁에 대한 당사자 의견 및 요청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교원)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가 크고, 재발이 우려됩니다. 보호자께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학부모) 이번 일의 원인이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잘못된 상담방식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방식을 개선해 주시고, 이번 일로 학생이 앞으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지장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분쟁조정 결과

(위원장) 과거의 문제보다는 관계회복 및 장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고 한발씩 양해가 필요합니다. 상호 수용을 전제로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OOO원을 지급하고, 선생님께서는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양 당사자 이의가 없으신가요.

(피해교원, 학부모 동의하면, 합의서(조정) 작성)

(위원장) 합의서(조정)에 당사자분께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에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당사자 사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분께서는 합의(조정)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교원지위법 적용 이외의 사안 관련 대응 방법

1) 고충심사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소청심사

「교원지위법」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에 따라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교육청 신고

지위, 직책,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여 교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소관 교육청 규칙에 따라 갑질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제5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내 예방교육 방안

교원지위법 제16조의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01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은 학생들이 가장 집중을 잘 하는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학급 분위기가 나빠져서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시기라면, 예방 차원에서 조회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을 일으키거나 목격한 학생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의 목적으로도 실시 가능합니다.

학생용 교육자료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은 결국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을 단순히 침해 당사자로 보지 않고, 다함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로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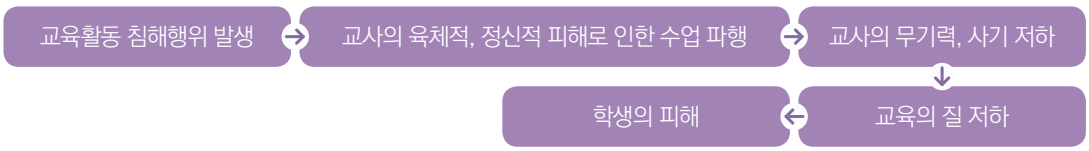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사례 및 관련 법령의 이해

학생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 사안의 상당수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개념이 없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말로 상대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사실을 말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직접 접촉하지 않았으면 때리는 흉내를 낸 것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폭행죄), 자신이 직접 찍지 않은 불법촬영물이면 보여 달라고 하거나 전달하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여기기도 합니다(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이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법치국가의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법상식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중에, 교사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법 사례에 대하여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후의 상세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처벌될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등을 검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법률지원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상호존중하는 문화 조성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생이 억울함을 느끼거나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 법령과 절차를 숙지한 상태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무심코 학생의 몸에 손을 대거나 큰 소리로 야단치면, 오히려 학생이 분노를 표출하여 심각한 침해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사의 실수를 확대하여 정서학대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행동으로 주장하며 교사의 대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상호존중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시 : 교수·학습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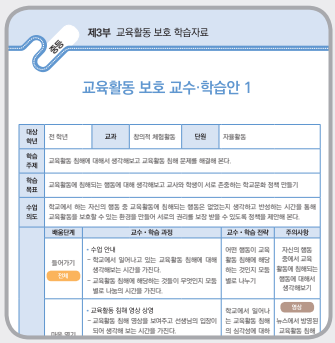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초등학생용, 중등학생용) 참조

02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르면,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하며, 그 밖에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보호자), 그리고 교직원이 삼주체가 되어 함께 지원하고 협조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원과 보호자는 학생(자녀)을 키우는 새로운 부부와 같음을 인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

1) 학교 안전사고 처리과정

체육 및 과학수업, 청소 및 식사 시간, 체험활동 등의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지도와 임장 등을 철저히 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호자에게도 신속하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2) 학교폭력 처리과정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높고, 학교생활부에 사안을 기재하는 등의 이유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매뉴얼에 따른 업무 처리를 해야 하며, 학부모와의 상담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평가 처리과정

평가 업무는 원칙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교사의 정당한 평가에 점수 상향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입각해서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학부모 민원 처리과정

학부모 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담임교사 상담 신청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합니다. 또한 타당한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학생의 학습권에 지장이 없는 한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교육활동 참여 방법 안내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의 교육활동 참여 방법

- 학교알리미 활용: 교육부에서 정한 공시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공시된 정보 활용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국·공립학교는 심의기능, 사립학교는 자문기능으로 운영
- 학부모회 참여: 학부모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반영 가능
- 학부모 총회 및 각종 교육 참여: 매 학년 초에 이루어지는 학부모 총회나 학교, 학년, 담임교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교육에 참여 가능

2) 보호자의 민원 제기시 유의사항

- 민원 제기 대상

  학급의 문제는 담임교사에게, 교과의 문제는 교과교사에게, 업무 문제는 담당업무 교원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담당교사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할 때 타 교원 및 학교 등과 비교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학생의 학습권 최우선 고려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자는 사전에 약속을 정하고 학교에 방문해야 하며 수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용건만 간단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은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 보호자의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도록 원칙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제6부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별 대응요령

아래에 제시한 사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따라 대표적인 사례로 구성하였으며,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최근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알아둠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01 상해와 폭행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

수업 시간 한 학생이 책도 펴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옆 친구에게 말을 걸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교사는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잠시 침묵해 기다려 보기도 하고, 반복해서 내용을 전달하며 수업에 집중하도록 타일러 봅니다. 하지만 학생은 가볍게 무시하고 계속 옆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옆 친구가 별 호응이 없자 이번에는 앞 친구에게 지우개를 뜯어서 던지는 바람에 앞에 앉은 학생도 울상입니다. 교사는 이대로 수업을 더 진행하는 것이 무리인 것 같아 학생들에게 과제를 하도록 하고, 그 틈에 학생에게 다가가 지도하기로 합니다. "☆야 수업하기 힘드니?" . 교사의 질문에도 학생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아 내가 뭘 어쨌다고 또~"라고 대응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책을 펼쳐주며 도와주려고 하지만, 교사의 손을 뿌리치고 짜증과 불만이 섞인 표정으로 교사를 노려봅니다. 수업을 방해하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치는 학생의 태도에 당황스럽지만, 남은 수업진행을 위해 일단락 짓고 돌아서 교탁으로 돌아가려는데 학생이 뒤에서 교사를 조롱하듯 중얼거리면서 보란 듯이 책상을 툭툭 차며 수업 방해 행동이 더 심해집니다. 교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렇게 계속 수업을 방해하면 벌점을 줄 수밖에 없어."하고 단호하게 말하자 학생은 교사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복부를 가격하였습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알아둡시다!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구타, 밀치는 행위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체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 폭행에 맞서 대응하기 보다는 즉시 상황을 탈피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폭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져 교사가 이를 피한 경우에도 폭행이 성립됩니다. 더구나 공무/업무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은 국·공립학교의 경우[공무집행방해죄], 사립학교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가중된 형태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해]는 신체적 기능 손상이나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정도에 따라 사건 당시 응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이후로 치료와 회복을 위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02 협박

근거 없이 시험결과를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

중간고사 시험이 끝난 후 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유는 오답 처리 된 문제가 왜 오답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사는 해당 문제를 확인하고 학부모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였지만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에게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네."라고 일관하였습니다. 전화통화로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한 교사는 학부모에게 학교로 내방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학부모는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네가 뭔데 바쁜 사람 오라 가라 하는 거냐. 그렇게 꼬장꼬장해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는 거냐! 원하면 교장실에서 보자."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교사는 학교관리자에게 학부모와 통화 사실을 이야기 하고,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오면 같이 상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밤 교사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한 학부모는 재차 자녀의 답을 정답으로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더니, 일관된 교사의 반응에 "내가 작년 담임은 명퇴시켰고, 그전 담임은 휴직 들어갔는데, 선생님도 교사 생활 그만하고 싶으세요?"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알아둡시다!

법적으로 [협박]은 적어도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와 같이 교사가 어떠한 요구사항을 거부할 시 교사(교사의 가족)의 생명 또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사로서의 직업적 곤란 상태를 만들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교사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협박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고, 협박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 또는 녹음,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사실을 알리고 학교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명예훼손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퍼뜨린 학생

종례 시간에 한 학생이 담임교사를 향해 조롱 섞인 말투로 "아~ 선생님 실망이에요."라고 흘리듯이 말하고는 몇몇 아이들이 눈빛을 주고받으며 히죽거립니다. 교사가 실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아니에요. 종례나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대응합니다. 교사는 학생들과 말씨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넘어갔지만, 나중에 다른 학생을 통해서 한 학생이 교사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한 학생이 '담임교사가 유부남인데 며칠 전 새벽에 젊은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걸 우연히 봤다.'며 교사의 사는 지역, 목격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사랑 눈 마주치면 소름끼친다.', '지난번에 내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등 교사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학생이 하는 짓궂은 장난이라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알아둡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는 평가가 침해 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와의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명예훼손(구체적 사실/허위사실 적시), 모욕(경멸적 언행)

Q.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A.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된다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불친절, 무례만으로는 모욕이라 할 수 없습니다.

04 모욕

수업 중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생

수업이 시작되어도 책상에 엎드려 계속 자고 있는 학생에게 그만 일어나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자 "씨X."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고개를 반대로 돌려 다시 엎드려 잡니다. 교사는 학생이 잠에서 깰 수 있도록 세수든, 잠시 서 있든 하라고 다시 이야기 합니다. 그러자 학생은 "XX년. @#$%^$ 귀찮게 하네!"라며 교사를 향해 욕을 하고는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알아둡시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적 언행을 하는 학생과 언쟁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교칙에 따라 생활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한 모욕적 언행을 들었을 시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침해현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05 손괴

교사의 지도에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나가버린 학생

벌칙으로 방과 후에 청소를 하게 된 학생이 그냥 집에 귀가하려는 것을 발견한 교사가 학생을 부르자 교사 말을 무시한 채 교실 문을 나서려고 합니다. 학원 일정을 핑계로 청소 당번일 때에도 그냥 가버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학생이었기에 공부만큼 공동체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함을 알려주기 위하여 불러 세운 교사를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바라본 학생이 "선생님이 학원 늦으면 책임질 거예요?"라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교사도 학생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지금도 시간은 간다고요!"라고 대답하며 마치 자신을 붙잡고 있는 교사가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한숨을 푹푹 내쉬며 원망의 눈초리로 교사를 바라봅니다. 청소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느냐는 교사의 질문에 학생은 "선생님은 저한테 안 미안하세요?"라고 맞받아칩니다. 반성의 미기도 없이 교사를 무시하는 듯 보이는 학생의 태도에 교사는 지도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학원 늦게 되는 것은 부모님께 내가 말씀드릴 테니 교무실에서 이야기 하자."하는데 학생이 미동 없이 한참을 교사의 얼굴만 노려보다 "씨X! X같네."라는 말을 내뱉고는 교실 앞문을 주먹으로 치고 지나가 유리창이 깨져버렸습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알아둡시다!

[손괴]의 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하는 행위는 단순 물품을 파손하고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물품을 파손하거나, 물품에 교사에 대한 비방과 욕설 등을 새기거나 낙서하는 형태로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 공용 물품에 교사에 대한 모욕 또는 비방의 낙서 또는 칼로 파는 등의 행위는 그 행위자를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행위자를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피해교원의 보호 필요성은 있으므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06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여교사 화장실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해온 학생

방과 후 교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칸 밑으로 휴대전화가 살짝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옆 칸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껴 황급히 나와 옆 칸 문을 두드려 보아도 잠겨있는 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교사는 얼른 교무실에 호출을 하여 몇몇 선생님이 화장실로 모였고, 한 남학생이 상기된 얼굴로 나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왜 여교사 화장실에 남학생이 있는지 이유를 묻자 "볼일이 급해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문을 세게 두드려 무서워서 대답 못하고 있었어요."라며 변명을 합니다. 재빨리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촬영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 하자, 학생이 휴대전화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저항합니다. 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학교에서는 복도 CCTV 중 여교사 화장실 출입구를 비추고 있는 몇몇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생이 과거에도 몇 차례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모습을 확보하였고, 학교에서는 피해원이 다수로 늘어날 것에 대한 걱정과 학생이 촬영물을 유포하였을까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알아둡시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에 소개되는 사례들이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에 해당하며, 최근 화장실 또는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특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로 유포 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안 처리 과정해서 증거 확보 및 관리, 보관 등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사안 처리는 피해교원의 성별에 따라 사안 담당자의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교원이 2차 3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07 불법정보유통

학부모 커뮤니티에 허위인 사실을 게시한 학부모 이야기

'00학교 0학년0반 교사000의 만행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판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교사의 실명과 소속을 공개한 글이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00월 00일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급 전체에 우리 아이가 소심하고, 피해의식이 있으니 말을 걸지 말라고 했다.', '00월 00일 우리아이를 불러서 "냄새 나는 것 같으니 잘 씻고 다녀"라고 했다.'등 전혀 사실무근의 내용들이었고, 교사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은 내용의 글들이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교사는 어떤 학생의 학부모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된 글의 내용은 오히려 학부모가 교사에게 매일같이 자신의 아이를 신경 써 달라며 전화 또는 문자로 전달했던 표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알아둡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 통신설비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확대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대응을 지체할수록 더욱 피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8 공무집행(업무)방해

교실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 학부모

한 학급의 반장이 교무실로 와서는 담임교사에게 “어떤 남자 어른이 00를 혼내고 있어요!”라고 다급히 말하였습니다. 교사가 놀라서 교실로 황급히 올라가자 아이들은 얼음처럼 얼어있고, 00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우선 이 학부모를 학생들과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무슨 연유인지 저와 교실 밖에서 이야기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학부모는 “네가 담임이냐? 교사가 지도를 똑바로 못하니까 내 새끼 해코지한 놈 내가 혼내주러 왔는데, 뭐! 잘못됐어?”라며 소리칩니다. “그렇더라도 학교에 이렇게, 그것도 교실로 예고 없이 오셔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교사는 당황하였지만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곧바로 뒤따라 온 동료 교사들과 학교관리자가 해당 교실로 와서 학부모를 밖으로 이끌고 교무실로 갔습니다. 학부모는 교무실에서도 한참을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하고 한 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알아둡시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사적 업무와 구별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받는 경우 그 행위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립학교의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동일하더라도 형법에서 법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09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수업 중 교사와 다수의 학생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를 한 학생 이야기

수업 중 고개를 푹 숙이고 자는 듯 보이는 학생 이름을 부르며 잠 깰 때까지 뒤에서 잠시 서서 수업을 받으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멍하니 교사의 얼굴만 바라보고 배시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학생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아 얼른 뒤로 가서 서 있으라고 하자 "잠시만요. 잠깐이면 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사의 지도를 장난으로만 여기는 것 같은 학생의 태도에 교사는 더 이상 수업 방해 하지 말고 얼른 뒤로 나가서 서라고 더 강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허리에 얹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몇몇 학생은 야유를 몇몇 학생은 비명을 지릅니다. 학생들 반응에 자세히 보니 학생은 발기 상태였고, 너무나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조롱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알아둡시다!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혐오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동료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목격자, 가해자의 행동과 자신의 반응 및 기분을 육하원칙에 준하여 메모 또는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0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고와 수정을 요구하는 학부모

학부모가 예고 없이 학교로 찾아와 교실 밖을 서성이며 수업을 지켜보거나 쉬는 시간에 갑자기 교실로 들어와 아이 상태를 살피고 돌아가곤 합니다. 학부모의 예고 없는 방문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리고, 사전에 연락 후 학교에 방문하시도록 안내하여도 학부모는 도리어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마음대로 못 오냐."라며 막무가내로 학교와 교실에 출입합니다. 수시로 교사에게 연락하여 자녀의 일과에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교사에게 자신의 아이특성에 맞추어 교육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아이가 오늘 배워 온 걸 물어보니 선생님이 제대로 잘못 알려준 것 같다 … 이렇게 지도하시는 게 효과적이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화를 자주 내시는 거 같다. 애들 화낸다고 잘 배우는 거 아니다."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수업을 평가하거나 지도 방식의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교사는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평가, 잦은 상담 요청에 교육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위축감을 느낍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알아둡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을 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단, 감정적 충돌은 의사소통 과정의 일부분에 속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고, 단순 일회적인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흔히 학부모가 학생과 교사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학생의 말만 듣고 이의 제기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다소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학부모(보호자)는 교육의 한 주체로서 민원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이의 제기 및 의견 제시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조건, 교육활동 침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력적 행동, 기타 별도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다면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초과한 부분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학부모의 민원제기에는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에,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를 접수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로 접수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11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알아둡시다!

업무시간 외 새벽 또는 밤중에 수시로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연락의 상황이 위중하거나 시급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① 학교관리자 및 교권보호책임관 등을 통하여 면담 시간 및 방법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② 이후에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재하고 개인전화로의 연락을 차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긴급 상황 발생 시 개인전화 외 학교전화 등으로 연락통로가 있다는 점은 별도로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동료교원 및 관리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다고 느껴졌을 때에 행위의 성격을 ①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인지 ② 일반적 침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침해일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학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갈등 상황인 경우에는 교육청 내에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감사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정당한 권한 내 행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2 교육활동 침해 이외의 사례

가.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일방적인 직위해제 통보

어느 날 갑자기 한 교사는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가 학교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직위해제(수업/담임의 역할 배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신고자(학생) 보호를 위해 누구에 의해 어떤 일로 신고를 당했는지 알려줄 수 없고, 아동에 의한 성폭력 신고를 받게 되면 학교장 긴급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조사 과정과 절차를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교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게 된 것에 억울함과 부당함을 느낍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알아둡시다!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직위해제를 통보받게 된다면 누구든 억울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교(직)원에의해 아동이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의 장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담임해제, 수업참여 배제 등)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교원은 수사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련하여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나. 학교관리자의 부당한 처우

학기 중 공립학교의 한 교사가 갑작스럽게 연가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학교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하루 연가사용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허가 할 수 없다는 답이 받았습니다. 이유는 학생들 수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주는 범위에서는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교사도 학생들 수업과

지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가 사용을 요청하는 교사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관리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동료들로부터 자신보다 가벼운 일에 쉽게 연가와 병가를 허가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학교관리자의 처우가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알아둡시다!

교원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학교관리자의 지도감독권이 상충하는 사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다. 교사 간 갈등

선배 교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한 후배교사에게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후배교사는 선의로 수락했던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의 일이 되어버린 현실과 점점 가중 되는 업무량에 친한 동료교사 몇몇이 있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선배교사는 많은 교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앞뒤가 다른 사람은 딱 질색이다. ….”라는 표현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후배교사는 자신을 겨냥하여 하는 말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후배교사는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선배 교사의 냉담한 반응과 “넌 아웃이야.”라는 말에 상처만 깊어져 학교 가는 것이 불편하고, 업무를 지속하기가 곤란함을 느낍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알아둡시다!

수업이나 학생 생활지도 등 직접적인 교육활동 이외에도 학교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갈등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개발진

성명	소속	직급
고영규	충주교현초등학교	교사
김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상담사
이안정	진산중학교	교사
임지백	인천원당초등학교	교사
왕건환	경기고등학교	교사
조기성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사
지산	울산광역시교육청	변호사
한진우	내성초등학교	교사

연구자료 CRM 2020-01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교원

발 행 일 2020년 1월

발 행 인 원장 반상진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기획·편집 디자인펌킨

인 쇄 처 예송미디어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교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